

서울特別市永登浦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09
----------	-----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17일

제출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 提案經緯

가.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형수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

2. 提案理由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구가 자치구가 됨에 따라 시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

3. 主要骨子

가. 제8조 제2항중 “시민”을 “구민”으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關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2 항중 “시민”을 “주민”으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